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30
----------	-------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의자 : 신정훈 · 김영호 · 황운하
주철현 · 정일영 · 한병도
최혜영 · 임호선 · 윤준병
이용빈 · 고용진 · 김승남
박상혁 · 노옹래 · 서삼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농어업기계화나 시설장비의 현대화, 경영정보화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이하 “농어업경영체”라 함)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 역시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를 “농어업경영체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생 략) <u><신 설></u>	제20조(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